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196호)  
등 10건

2021. 5.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지 원

## 목 차

### [노웅래의원안]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김병욱의원안, 김은혜의원안]

|                       |    |
|-----------------------|----|
| I. 제안경위 .....         | 13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3 |
| III. 검토의견 .....       | 15 |

### [진선미의원안]

|                       |    |
|-----------------------|----|
| I. 제안경위 .....         | 18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8 |
| III. 검토의견 .....       | 19 |

### [김정재의원안]

|                       |    |
|-----------------------|----|
| I. 제안경위 .....         | 24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4 |
| III. 검토의견 .....       | 25 |

### [이해식의원안]

|               |    |
|---------------|----|
| I. 제안경위 ..... | 35 |
|---------------|----|

|                      |    |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35 |
| Ⅲ. 검토의견 .....        | 36 |

#### [임호선의원안]

|                      |    |
|----------------------|----|
| Ⅰ. 제안경위 .....        | 43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43 |
| Ⅲ. 검토의견 .....        | 44 |

#### [김영호의원안]

|                      |    |
|----------------------|----|
| Ⅰ. 제안경위 .....        | 53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53 |
| Ⅲ. 검토의견 .....        | 54 |

#### [엄태영의원안]

|                      |    |
|----------------------|----|
| Ⅰ. 제안경위 .....        | 59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59 |
| Ⅲ. 검토의견 .....        | 60 |

#### [강준현의원안]

|                      |    |
|----------------------|----|
| Ⅰ. 제안경위 .....        | 66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66 |
| Ⅲ. 검토의견 .....        | 68 |

## 심사대상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목록

| 연 번 | 제 안 자 | 제 안 일<br>(회부일)              | 주요내용                                                                                                                                            |
|-----|-------|-----------------------------|-------------------------------------------------------------------------------------------------------------------------------------------------|
| 1   | 노웅래의원 | '21.01.06.<br>( '21.01.07.) |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
| 2   | 김병욱의원 | '21.01.11.<br>( '21.01.12.) | ·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                                                                                                      |
|     | 김은혜의원 | '21.01.27.<br>( '21.01.28.) | ·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                                                                 |
| 3   | 진선미의원 | '21.01.15.<br>( '21.01.18.) |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
| 4   | 김정재의원 | '21.01.22.<br>( '21.01.25.) | ·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 5   | 이해식의원 | '21.01.29.<br>( '21.02.01.) | ·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갓길 통행위반 등과 같이 법규 위반이 잦고, 위반 시 교통사고 유발과 직결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연간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를 누적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             |
| 6   | 임호선의원 | '21.02.03.<br>( '21.02.04.) | ·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7   | 김영호의원 | '21.02.08.<br>( '21.02.09.) | ·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br>·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 |

| 연 번 | 제 안 자 | 제 안 일<br>(회 부 일)            | 주 요 내 용                                                                                                                                                                                                                  |
|-----|-------|-----------------------------|--------------------------------------------------------------------------------------------------------------------------------------------------------------------------------------------------------------------------|
|     |       |                             | 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 8   | 엄태영의원 | '21.02.16.<br>( '21.02.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함.</li> </ul>                                                                    |
| 9   | 강준현의원 | '21.02.24.<br>( '21.0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li> <li>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i> </ul> |

## [노웅래의원안]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1. 6.

다. 회 부 일 : 2021. 1.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인데, 처벌이 관대하니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2조제1항, 제148조의2 및 안 제47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 해당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경찰청장의 교체 명령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또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

####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47조의2(특수번호판으로의 교체 명령) ① 경찰청장은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49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년 이내의 범위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생략)

<신설>

에서 특수번호판(기존 번호판에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등(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번호판의 형태나 교체 기간 및 교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9. 제44조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교체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시 등록번호판을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안 제47조의2 신설, 제148조의2제5항 신설)

현행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93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2회 한 경우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필수)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매년 1만 건 이상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 및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봄.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구 분      | 사 고(건) | 사 망(명) | 부 상(명) |
|----------|--------|--------|--------|
| ‘16년     | 19,769 | 481    | 34,423 |
| ‘17년     | 19,517 | 439    | 33,364 |
| ‘18년     | 19,381 | 346    | 32,952 |
| ‘19년     | 15,708 | 295    | 25,961 |
| ‘20년(잠정) | 17,247 | 287    | 28,063 |

※ 자료: 경찰청

참고로,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자는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기존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 주, 미네소타 주 등은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번호판에 특수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황색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함.

###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외국 사례 및 사진]

| 대만 음주번호판                                                                            | 대만 일반번호판                                                                             |
|-------------------------------------------------------------------------------------|--------------------------------------------------------------------------------------|
|   |  |
| 음주운전 재적발 시 음주번호판 부착                                                                 |                                                                                      |
| 미 오하이오주 음주번호판                                                                       | 미 오하이오주 일반번호판                                                                        |
|  |  |
| 초범이라도 인명사고 발생하거나 재범 시 부착                                                            |                                                                                      |
| 미 미네소타주 음주번호판                                                                       | 미 미네소타주 일반번호판                                                                        |
|  |  |
| 최초 음주운전 이후 10년 이내 재범 또는 초범 시 BAC 0.16 이상 동일 시 부착                                    |                                                                                      |

다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권의 침해<sup>1)</sup>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단 한 번이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기만 하면 그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죄질의 차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운전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정 차량을 그 소유자 외에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한 제재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려운 점, 의무위반자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렌터카나 리스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헌법재판소결정 2002헌마425)

또한 현행 법 체계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의무,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은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 경찰청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주와 음주운전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점, 렌트카 등 회피수단이 많은 점, 특수문자 추가 시 인식카메라가 새로 추가되는 문자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S/W 업데이트에 막대한 소요비용<sup>2)</sup>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법무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태양과 관계 없이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아파트·쇼핑몰·공공시설 등 약 2.3만 개소와 경찰청 단속카메라 약 1만대 등으로 개소 당 약 30~100만원 소요

## 2.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 취소 또는 3회 이상 면허 취소·정지시 영구적 결격사유로 규정(안 제82조)

현행법 제44조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운전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sup>3)</sup>’ 시행 이후 현행법 제82조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결격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

| 구 분                |       | 윤창호법<br>시행 前 | 윤창호법<br>시행 後(현행)<br>※ '19. 6. 25.~ |
|--------------------|-------|--------------|------------------------------------|
| 음주운전 사상사고<br>후 미조치 |       | 5년           | 5년                                 |
| 음주운전<br>교통사고       | 사망사고  | -            | 5년                                 |
|                    | 3회 이상 | (3회 이상) 3년   | (2회 이상) 3년                         |
|                    | 2회    | 1년           |                                    |
|                    | 1회    | 1년           | 2년                                 |
| 음주운전               | 4회 이상 | (3회 이상) 2년   | (2회 이상) 2년                         |
|                    | 3회    | 2년           |                                    |
|                    | 2회    | 1년           |                                    |
|                    | 1회    | 1년           | 1년                                 |

※ 자료: 경찰청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회 이상 취소되거나 3회 이상 취소·정지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임.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6037호, 2019. 6. 25. 시행)

참고로 해외의 경우, 독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 이상이거나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에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고, 영국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영구박탈되며, 노르웨이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영구박탈됨.

또한 미국의 경우 코네티컷주,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영구박탈되고, 뉴욕주는 25년 내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 또는 사고 3~4회 및 심각한 운전 위반을 범할 시 운전면허를 영구박탈하고 있음<sup>4)</sup>.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타 법령에서 건설기계, 여객자동차(택시·버스 등)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및 항공종사자 등 운수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다소 과도한 측면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4) 윤해성·전영실·김유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방안 실시에 따른 시행성과 분석 및 해외처벌 실태」, 2019,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참조

[타 법령에서의 면허 재취득에 필요한 결격기간 규정 비교]

| 구 분         | 결격기간*          | 근거조문                 |
|-------------|----------------|----------------------|
| 건설기계 관리법    | 1년<br>(무면허 2년) | 제27조 제5호<br>제28조 제7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5년             | 제24조 제1항 제3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제9조 제3호              |
| 항공안전법       | 2년             | 제34조 제2항 제2호         |
| 철도안전법       |                | 제11조 제5호             |
| 해운법         |                | 제5조 제1항 제4호          |

※ 자료: 경찰청

그리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3회 이상 취소·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면서 그 재범 판단에 있어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음주운전의 효과적인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범 및 상습성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한바, 해외 입법례<sup>5)</sup>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sup>6)</sup>을 참고하여 재범 판단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하는 대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음.

5)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5년, 미국 뉴욕주는 10년을 음주운전의 재범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따라서 개정안의 수용 여부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강화를 통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의 필요성 및 효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영구박탈제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대 결격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 운전면허의 영구적 박탈은 최후적 제재 수단의 일종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2021년 4월 현재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기에 앞서 기(既) 개정된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윤창호법’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i) 개정안 등의 입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ii) 처벌 강화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감안하여 대체적 수단을 모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일

부개정법률안」 2건<sup>7)</sup>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최대 5년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결격기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운전면허 결격기간 관련 경찰청 수정의견]

| 구 분                |       | 운창호법<br>시행 前 | 운창호법<br>시행 後(현행)<br>※ '19. 6. 25.~ | 경찰청<br>수정의견 |
|--------------------|-------|--------------|------------------------------------|-------------|
| 음주운전 사상사고<br>후 미조치 |       | 5년           | 5년                                 | 10년         |
| 음주운전<br>교통사고       | 사망사고  | -            | 5년                                 | 10년         |
|                    | 3회 이상 | (3회 이상) 3년   | (2회 이상) 3년                         | 5년          |
|                    | 2회    | 1년           |                                    |             |
|                    | 1회    | 1년           | 2년                                 | 3년          |
| 음주운전               | 4회 이상 | (3회 이상) 2년   | (2회 이상) 2년                         | 5년          |
|                    | 3회    | 2년           |                                    |             |
|                    | 2회    | 1년           |                                    | 3년          |
|                    | 1회    | 1년           | 1년                                 | 2년          |

※ 자료: 경찰청

7) 의안번호 제2106982호(노동래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발의), 의안번호 제2109246호(임호선의원 대표발의, 2021. 3. 31. 발의)

## [김병욱의원안, 김은혜의원안]

### I. 제안경위

#### 1. 김병욱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병욱의원 등 18인

나. 제 안 일 : 2021. 1. 11.

다. 회 부 일 : 2021. 1. 12.

#### 2. 김은혜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1. 1. 27.

다. 회 부 일 : 2021. 1.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김병욱의원안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 2. 김은혜의원안

최근 노면전차는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노선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통행에 관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도로·차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법」과 관계 부령은 전용도로·차로를 구분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 혼용차로의 통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 현 행                                                   | 김병욱의원안                                                                                                                                   | 김은혜의원안                                                                                                                                      |
|-------------------------------------------------------|------------------------------------------------------------------------------------------------------------------------------------------|---------------------------------------------------------------------------------------------------------------------------------------------|
|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②<br>(생략)<br><u>&lt;신설&gt;</u> |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②<br>(현행과 같음)<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②<br>(현행과 같음)<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도시철도법」 8)에서는 특별한 경우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8) 「도시철도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에도 혼용차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노면전차 차로의 종류 >

|                                                                                   |                                                                                   |                                                                                     |
|-----------------------------------------------------------------------------------|-----------------------------------------------------------------------------------|-------------------------------------------------------------------------------------|
|  |  |  |
| 노면전차 전용도로                                                                         | 노면전차 전용차로                                                                         | 혼용차로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2018년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18.3.27. 공포) 시에도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노면전차 도입 초기부터 혼용차로를 운영하게 되면, 운전자들의 혼란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우선 초기에는 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로 운영하고, 추후 필요시 보완 입법하기로 결정<sup>9)</sup>한 바 있으며, 아직 국내에는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고, 혼용차로 운영 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다만, 현재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법률 간 규정내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9) “도시철도법”에는 혼용차로 규정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혼용차로 규정은 일단 제외하고 개정하기로 관계기관(경찰청, 국토부, 지자체 등) 협의

한편, 「도로교통법」에 혼용차로 통행 근거를 두는 경우 단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sup>10)</sup>하기보다는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10) \*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혼용차로 설치 가능 사유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 [진선미의원안]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1. 15.

다. 회 부 일 : 2021. 1.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규정한 법 제53조의 조문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하여 영유아 하차시 보호자 인계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u>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u>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u>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u>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br>----- <u>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u> -----<br>-----<br>----- <u>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u> -----<br>----- <u>. 다만, 위 장치와 표시는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② ~ ⑦ (생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
|--------------------|-------------------------------------------------------------------------|
| <p>&lt;신 설&gt;</p> | <p>⑧ 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하차하는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p> |
|--------------------|-------------------------------------------------------------------------|

## 1.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명확화(안 제53조제1항)

현행법 제53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문의 해석상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항상(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으며, 이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탑승 표시에 대해서도 동일함.

그러나 현행법 입법의 의도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시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탑승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5까지의 조문 중 다수가 ‘타고 내리는 경우’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와 같이 동일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를 각 조항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고, 법 제53조제1항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였을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조문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2. 동승보호자의 영유아 하차시 보호자 인계 의무 신설(안 제53조 제8항 신설)

현행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 탑승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상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시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에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통학버스 하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또는 실종사건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동승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어린이 등의 인수주체인 “학부모 등 보호자”의 외연이 법률상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동승보호자의 인계시 다소간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53조제8항에서는 ‘영유아’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를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 조항과의 통일성 및 중의성 해소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 내용이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것이지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 한정하여 동승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동 규정은 처벌 규정 없이 훈시규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 [김정재의원안]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1. 1. 22.

다. 회 부 일 : 2021. 1. 2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사고 시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전면허 신규취득·갱신 시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제80조의2(심폐소생술 교육) ① 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sup>11)</sup>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함<sup>12)</sup>.

11) 운전면허시험 중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대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의미함.

그런데 3시간(자동차 면허) 또는 5시간(원동기 면허 및 2종 소형면허)에 걸쳐 진행되는 전문학원의 학과교육 내용에는 응급상황 시의 심폐소생술 방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sup>13)</sup>, 도로교통공단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는 심폐소생술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sup>14)</sup>]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방법 |
|-------------------------|-------|----------------------------------------------------------------------------------------------------------------------------------------------------------------------------------------|-------|
| 운전면허를<br>신규로<br>받으려는 사람 | 1시간   | ○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br>○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br>○ 안전운전 기초이론<br>○ 위험예측과 방어운전<br>○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br>○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br>○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br>○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br>○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자동차안전의 이해 | 시청각   |

(비고)

1.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2)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에는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는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13)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발행 ‘운전면허교본’ 참조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관련)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다만,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의 일종인 학과시험의 내용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갱신하려는 자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과 별개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인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민간기관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시간·내용 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 중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이수증으로 인정하여야 할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예시]

| 기관                                | 일반과정                 |                     |            | 비용                  |
|-----------------------------------|----------------------|---------------------|------------|---------------------|
|                                   | 교육시간                 | 개소                  | 지역         |                     |
| 대한심폐소생술 협회                        | 1시간 20분<br>(기관마다 다름) | 현재 1개소<br>(276개 기관) | 서울<br>(전국) | 25,000<br>(기관마다 다름) |
| 대한적십자사                            | 4시간                  | 15개                 | 전국         | 40,000              |
| 대한인명구조협회                          | 5시간                  | 1                   | 서울         | 50,000              |
| EFR<br>(Emergency First Response) | 4~6시간                | 1                   | 서울         | 150,000             |

※ 자료: 경찰청

그리고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공인된 기관에서 매년 3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 역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경우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따라 인당 1~6시간의 시간적 비용과 25,000원~150,000원의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심폐소생술 교육 비용을 5,000원으로 산정했을 경우 교육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5년간(2022~2026년)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은 총 570억 6,500만원(연평균 114억원)으로 추계되는데<sup>15)</sup>,

15) 1인당 단가는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의 단가인 5,000원을 참고한 것임.

해당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비용의 50%를 자치단체보조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1인당 5,000원의 50%인 2,500원을 지원).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를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비용추계서가 참고한 1인당 단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들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실소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몇 년간 동결된 수준 인바, 현재 실제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총 금전적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공인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법률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참고로 경찰청은 현재 공인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이 없는 점, 교육 의무화 시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
|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 【참고】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비용추계(국회 예산정책처)

###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80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96억 9,100만원, 2026년 135억 4,0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70억 6,500만원 (연평균 114억 1,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2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합계     | 연평균    |
|---------------------------------------------|-------|-------|--------|--------|--------|--------|--------|
| 운전면허 취득 및<br>갱신 시 심폐소생술<br>교육<br>(안 제80조의2) | 9,691 | 9,051 | 11,252 | 13,531 | 13,540 | 57,065 | 11,413 |

### II. 재정수반요인

-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안 제80조의2)
-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갱신하려는 사람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지방경찰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III.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5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운전면허시험 응시료, 적성검사료와 같이 개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안 배경 및 이유, 의원실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교육비용을 2021년 기준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율은 50% 적용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과 갱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규 취득자 수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규모로 가정하며 갱신자 수는 도로교통공단 자료 활용
  - 신규 취득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증감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추계에서는 최근 3년(2018~2020년) 운전면허 취득자 수의 연평균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sup>16)</sup>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자 수에 심폐소생술 1인당 교육비용, 국고보조율 50%를 곱하여 산출

1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소비자물가상승률<br>(CPI) | 0.5% | 1.0% | 1.2% | 1.2% | 1.3% | 1.4%  |

17)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심폐소생술 1인당 교육비용을 2021년 기준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율은 50%이다.

<비용추계 산식>

연간 추가재정소요 = 교육대상자 수<sup>1)</sup> × 1인당 교육비용<sup>2)</sup> × 50%

이때,  $t$ 는 추계연도(2022~2026년)

1) 교육대상자 수 = 취득<sup>a)</sup> + 갱신<sup>b)</sup>

a) 취득은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수의 연평균을 말하며,  
871,805명(도로교통공단 자료)

b) 갱신은 2020년 말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수 추정(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최근 3년(2018~2020년) 연평균  
운전면허 갱신율(91%, 경찰청 자료)

2) 1인당 교육비용 = 1인당 교육비용 <sub>$t-1$</sub>  × (1 + 소비자물가상승률 <sub>$t$</sub> )

2021년 기준 심폐소생술 1인당 교육비용은 5,000원(보건복지부 자료)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적용

## 2.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안 제80조의2)

### 가. 교육대상자 수

□ 개정안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자 수는 2022년 3,830,407명,  
2026년 5,087,203명으로 추정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평균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수는 871,805명이고,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규모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2018년 1,075,006명, 2019년 746,349명, 2020년 794,061명
-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2022~2026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수에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평균 운전면허 갱신율 91%를 적용하여 교육대상자 수를 산출

[표 21]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자 수 추정: 2022~2026년

(단위: 명)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신규 | 871,805   | 871,805   | 871,805   | 871,805   | 871,805   |
| 갱신 | 2,958,602 | 2,663,178 | 3,466,605 | 4,277,928 | 4,215,398 |
| 합계 | 3,830,407 | 3,534,983 | 4,338,410 | 5,149,733 | 5,087,203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1인당 교육비용

□ 1인당 교육비용은 2022년 5,060원, 2026년 5,323원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인당 교육비용은 5,000원<sup>17)</sup>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기간 동안의 1인당 교육비용을 추정

[표 22] 심폐소생술 1인당 교육비용 추정: 2022~2026년

(단위: 원)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1인당 교육비용 | 5,060 | 5,121 | 5,187 | 5,255 | 5,323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96억 9,100만원, 2026년 135억 4,0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570억 6,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2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합계     |
|-------------------------|-----------|-----------|-----------|-----------|-----------|--------|
| 교육대상자 수(A, 명)           | 3,830,407 | 3,534,983 | 4,338,410 | 5,149,733 | 5,087,203 | —      |
| 1인당 교육비용(B, 원)          | 5,060     | 5,121     | 5,187     | 5,255     | 5,323     | —      |
| 추가재정소요(A×B×50%,<br>백만원) | 9,691     | 9,051     | 11,252    | 13,531    | 13,540    | 57,065 |

## [이해식의원안]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 29.
3. 회 부 일 : 2021. 2.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서 결정됨.

그런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여 범칙금 통고처분할 경우와는 달리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루어지며 면허벌점 부과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허 취득 후 최초 속도위반으로 단속되기까지 615일이 걸렸으나 10회 위반 시 그 전에 단속된 날로부터 80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1회 위반자보다 10회 위반자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건수가 2배 이상 많은 점 등 법규위반이 반복될수록 다시 위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에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갓길 통행위반 등과 같이 법규 위반이 잦고, 위반 시 교통사고 유발과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연간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 제3항 단서 신설).

개정안은 신호 위반 등 4개 행위에 대하여 연간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법령에서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각 처벌 조항에 따라 해당 운전자에게 형벌에 해당

하는 벌금(단,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과 운전면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음.

개정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통해 위반 차량이 단속된 경우 차  
량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 가능할 뿐 운전면허 벌점 부과 등도 불가하여 위반에 대한 억제 효  
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속, 신호위반 등과 같이 법규 위반이 잦고, 위반 시 교통사고 유발  
과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 가산제를 도입하  
여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누진 가산제를 도입하는 사항과 관련  
해서는 아래 사항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개정안은 제160조제1항에 따른 16개의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  
중 ‘과속’,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누진 가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위반’보다는 오히려 ‘중앙선 침범’

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의 위험성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인원 등을 고려할 때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 및 교통사고 통계 등(2020년 기준)>

| 위반내용                   | 조문      | 부과건수<br>(건) | 교통사고   |       |
|------------------------|---------|-------------|--------|-------|
|                        |         |             | 발생(건)  | 사망(명) |
| 신호 위반                  | 제5조     | 2,527,403   | 24,512 | 267   |
| 보도침범                   | 제13조제1항 | 31,412      | 1,099  | 7     |
| 중앙선 침범                 | 제13조제3항 | 146,099     | 7,966  | 193   |
|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 제14조제2항 | 61,811      | 30     | 0     |
| 제한속도 위반(과속)            | 제17조제3항 | 12,229,134  | 1,285  | 277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3조    | 140,580     | 58     | 0     |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 제25조제5항 | 11,484      | 19     | 0     |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br>(우회전 방법) | 제25조제1항 | 35,659      | 2,241  | 3     |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br>(좌회전 방법) | 제25조제2항 | 66,373      | 2,207  | 6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제27조제1항 | 29,581      | 4,706  | 77    |
| 긴급자동차 피양 위반(교차로)       | 제29조제4항 | 2           | 1      | 0     |
| 긴급자동차 피양 위반<br>(교차로 외) | 제29조제5항 | 3           | 0      | 0     |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제39조제4항 | 13,199      | 192    | 5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 제60조제1항 | 12,187      | 1      | 0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60조제1항 | 58,428      | 1      | 0     |
|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 제61조제2항 | 45,999      | 2      | 0     |

※ 자료: 경찰청

4개의 과태료 누진 가산 항목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변경하거나, 16개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 모두에 대하여 누진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과태료 누진 가산을 각 위반 항목별로 개별 적용할 것인지 항목들을 통합하여 일괄 적용할 것인지와 연간 위반 횟수 누진 계산 시 1년의 기산점을 어느 시점<sup>18)</sup>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위반해도 벌금은 가산하여 부과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유사 행위에 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과태료 가산 처분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담합하여 연 2회까지는 고용주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3회부터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하였음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제도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벌금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누진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행 체계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범칙금 부과가 불가하여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sup>19)</sup>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금에 관한 누진 가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

18)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지 최초 위반시부터 1년간으로 할 것인지 등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

19)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 규정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 절차를 거쳐 벌금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65조에 따라 즉

현행 범칙금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sup>20)</sup>, 초과속 운전<sup>21)</sup> 등의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누진하여 형벌 수준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하여 누진 가산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과태료 누진 가산제를 직접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과태료 누진 가산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과태료의 상한만을 넓게 두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이를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sup>22)</sup>

---

결심판을 청구하게 됨.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임. 즉, 현행 체계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 누진 가산을 통해 그 액수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이를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에도 전과자로서의 기록은 남게 되는 것임.

2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2)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처분 사례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에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2]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2]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
-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에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5]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

따라서, 도로교통법령에 과태료 누진 가산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체계와 같이 법률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을 넓게 두고(즉, 과태료 상한을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개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이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임호선의원안]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1. 2. 3.
3. 회 부 일 : 2021. 2.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지원(장소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32. (생략)<br>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br><br><신설><br><br><신설><br><br><신설><br><br>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br>① ~ ③ (생략)<br><신설> | 제2조(정의) -----<br>-----.<br>1. ~ 32. (현행과 같음)<br>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br><br>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br>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br>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br>다.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br><br>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모범운전자의 |

|  |                                                                |
|--|----------------------------------------------------------------|
|  | <u>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
|--|----------------------------------------------------------------|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sup>23)</sup>의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의<sup>24)</sup>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현재 18개 지부, 257개 지회를 두고 25,570명이 활동중에 있음.

먼저,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 운전자로 제한적이고, 현재 대상자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 업무를 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인력 충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체계에서는 일반운전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

2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중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4)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에 반영한다면 무사고 10년의 기산점을 어느 기준시점으로 할 것인지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sup>25)</sup>

### <10년 무사고 경력자 현황>

| 구분                                       | 전체         | 제1종        | 제2종        |
|------------------------------------------|------------|------------|------------|
| 전체 운전자<br>(운전면허소지자,<br>'20년 말 기준)        | 33,352,139 | 20,821,694 | 12,530,445 |
| 10년 무사고 운전자<br>(’11. 4. 26 ~ ’21. 4. 25) | 22,903,662 | 16,022,806 | 6,880,856  |

※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모범운전자는 ‘경찰보조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제2호<sup>26)</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sup>27)</sup>에 따라 신호 또는 지시 권한이 있어, 교통 관련 지식과 운전 경험 등이 필요한데,

25) 운전면허 발급일 등을 기준시점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면허가 없어 운전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고 곡해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봄.

26)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인 일반운전자 중에는 실제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므로(일명 장롱면허), ‘일반운전자 10년 무사고 경력’을 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지원(장소제공)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관련한 장소 부족으로 장비 보관과 휴식 등이 곤란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의3<sup>28)</sup>에 따라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보험 가입, 연합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sup>29)</sup>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sup>30)</sup>

28)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와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국·공유재산까지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유사 성격의 자원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녹색 어머니회 등의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국유재산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sup>31)</sup>에 따라 반드시 같은 법 별표를 개정하여야 하며 타법 개정도 방식도 불가능함. 이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902호,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이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sup>32)</sup>

동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공익 목적 활동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수행에 국유재산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

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32) 2021.2.3. 발의, 2021.2.4.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1.4.9.현재 미상정)

않으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특례 신설은 중복지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다른 단체나 기관 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찰청은 모범운전자들의 안정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모범운전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장·장비·보험가입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한다면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유사단체 현황 비교>

| 구분                 |                       | 모범운전자회                     | 의용소방대                    | 자율방범대                                | 녹색어머니회                                 |                         |
|--------------------|-----------------------|----------------------------|--------------------------|--------------------------------------|----------------------------------------|-------------------------|
| 목적                 |                       | 교통안전                       | 화재예방·진압                  | 범죄예방                                 | 어린이 교통안전                               |                         |
| 활동내용               |                       | • 교통안전 봉사활동<br>• 거리질서 홍보활동 |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  | • 야간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캠페인          | •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지도<br>•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지도계몽 |                         |
| 조직단위               |                       | 지방청/경찰서                    | 사도/사읍면                   | 읍·면·동/지구대·파출소                        | 지방청/경찰서                                |                         |
| 인원('20년 '12월 기준)   |                       | 약 2만 5천명                   | 약 9만6천명                  | 약 10만7백명                             | 약 79만명                                 |                         |
| 근거법률               |                       | 도로교통법                      | 의용소방대법                   | 없음                                   | 없음                                     |                         |
| 지도·감독 주체           |                       | 해당없음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전국<br>중앙회<br>(연합회) | 중앙회(연합회) 설립 유무        | 설립                         | 설립                       | 설립(비공식)                              | 설립(비공식)                                |                         |
|                    | 법인 유무 /주무부처           | 해당/경찰청 ※ 민법 상 법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경찰청 ※ 민법 상 법인                       |                         |
|                    | 근거 법률                 | 도로교통법                      | 의용소방대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유무 / 등록부처 | 해당/경찰청 (연합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경찰청 (중앙회)                           |                         |
| 예<br>산             | 국<br>가                | 편성액 ('20년 기준)              | 14억 8,248만원              | 약 2억 7,500만원                         | 약 11억 700만원                            | 7억 374만원                |
|                    |                       | 근거                         | 도로교통법                    | 의용소방대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                    | 지<br>자<br>체           | 편성액 ('20년 기준)              | 약 1억원                    | 약 690억원                              | 약 191억원                                | 약 8억원                   |
|                    |                       | 근거                         | • 도로교통법<br>• 모범운전자 관련 조례 |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br>•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 |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br>•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 • 녹색어머니회 또는 교통 안전 관련 조례 |

※ 자료: 경찰청

<경찰청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 예산      | 세부 내역                                 |
|------|---------|---------------------------------------|
| '16년 | 78,641  | 겨울점퍼 29,258 / 우의 38,496 / 간담회 10,887  |
| '17년 | 70,345  | 겨울점퍼 22,673 / 우의 36,784 / 간담회 10,887  |
| '18년 | 125,029 | 겨울점퍼 77,467 / 우의 36,562 / 간담회 11,000  |
| '19년 | 104,600 | 유니폼 57,000 / 마스크 36,500 / 간담회 11,100  |
| '20년 | 148,248 | 유니폼 107,500 / 마스크 36,500 / 간담회 11,100 |

※ 자료: 경찰청

## [김영호의원안]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2. 8.
3. 회 부 일 : 2021. 2.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함.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도로 외의 구역에서의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に必要な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및 제43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기능연습’을 제외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25. (생략)                                                                                                                               | 1. ~ 25. (현행과 같음)                                                                                                                                              |
| 26. “운전”이란 도로( <u>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u> )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6. ----- <u>제43조·제44조</u> ----- <u>제148조의2·제152조제1호·제154조제2호</u> -----<br>-----<br>-----<br>-----<br>-----.                                                   |
| 27. ~ 33. (생략)                                                                                                                              | 27. ~ 33. (현행과 같음)                                                                                                                                             |
| 법률 제17891호 도로교통법 일부<br>개정법률                                                                                                                 | 법률 제17891호 도로교통법 일부<br>개정법률                                                                                                                                    |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br>-----<br>-----<br>-----<br>-----.<br><u>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u> |

|  |                                                        |
|--|--------------------------------------------------------|
|  | <u>차등의 운전</u> 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안은, 아파트·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의 장소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무면허 운전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도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통안전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입법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을 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상 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음주운전, 과로·약물 상태에서의 운전 및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 의무 위반이 있음.<sup>33)</sup>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와 달리 아파트·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의 장소는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로서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

33)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4조 음주운전, 제45조 과로·약물 상태에서 운전, 제54조제1항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 의무, 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는 점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불특정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으로서, 운전면허 제도도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의 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시험 등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 한해 운전을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도로’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 행위를 금지하여 교통경찰권이 개입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운전기능연습’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는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면허 운전 규제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운전기능연습 외에도 농장에서 차량형 농사기구 사용, 골프장에서 코스 이동 시 카트 차량 이용, 어린이 테마파크 또는 관광지에서의 미니 레이싱 게임 체험 활동, 실내 바닥용 청소차량 및 공항 등에서 이용되는 실내 이동차량 운용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sup>34)</sup>

34)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기구·장치<sup>35)</sup>가 운전되고 있는 사례는 다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향후 운전기능연습을 제외한 상기의 행위 모두가 운전면허 취득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국민생활과 영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엄태영의원안]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2. 16.
3. 회 부 일 : 2021. 2.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는 '과속' 행위의 치사율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두번째로 높은 '중앙선 침범' 치사율인 2.6%보다 약 8배 가량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5년간 과속행위에 대한 경찰청 연도별 무인단속 건수(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도 2015년 약 10만건에서 2019년 약 1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시적인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음.

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고자 함(안 제156조 제2항 신설,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2조제1항).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56조(벌칙) (생략)                                                                                                                                                             | 제156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설>                                                                                                                                                                       | ②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1항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다만, 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략)                                                                                                                                                        |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 ③ -----<br>-----<br>-----<br>-----<br>-----<br>-----<br>-----<br>-----                                                                                                                                                               |

|                                                                                                                                                    |                                                                                                                                                                                                                                                                                                                                                                                            |
|----------------------------------------------------------------------------------------------------------------------------------------------------|--------------------------------------------------------------------------------------------------------------------------------------------------------------------------------------------------------------------------------------------------------------------------------------------------------------------------------------------------------------------------------------------|
| <p>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단서 신설&gt;</p>                             |                                                                                                                                                                                                                                                                                                                                                                                            |
| <p>1.·2. (생략)</p> <p>④ (생략)</p> <p>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③ (생략)</p> | <p>-----<br/>-----<br/>-----<br/>-----<br/><br/>----- .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본문에서 정한 과태료의 2배까지 가중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2조(통칙) ① -----<br/>-----제156조제1항-----<br/>-----<br/>-----<br/>-----<br/>-----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개정안은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운전 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사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운전에 대한 벌금(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또는 과태료(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가 낮은 수준이므로,

1년 이내에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운전을 반복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함으로써 과속운전에 대한 억제 수단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과속단속 현황>**

(단위: 건)

| 구분    | 계(A)       | 40km/h 이하  | 40km/h 초과(B) | 비율(B/A) |
|-------|------------|------------|--------------|---------|
| 2016년 | 8,092,611  | 7,983,085  | 109,526      | 1.4%    |
| 2017년 | 11,836,906 | 11,712,916 | 123,990      | 1.0%    |
| 2018년 | 12,094,808 | 11,955,720 | 139,088      | 1.1%    |
| 2019년 | 12,407,765 | 12,278,987 | 128,778      | 1.0%    |
| 2020년 | 12,479,076 | 12,347,767 | 131,309      | 1.1%    |

※ 자료: 경찰청

다만, 개정안과 같이 1년 이내에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운전을 반복하여 벌금이 두배로 가중(2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부과될 경우 현행 체계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범칙금 부과가 불가하여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sup>36)</sup>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벌금 가중 처분을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범칙금 제도 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과태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는 없으나 동일·유사 행위에 관한

36)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 규정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 절차를 거쳐 벌금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됨.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임. 즉, 현행 체계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 가중을 통해 그 액수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이를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에도 전과자로서의 기록은 남게 되는 것임.

금전적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벌금에 관한 개정 내용과 그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0대국회에서는 ‘초과속’ 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1611호,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 취지가 대안에 반영<sup>37)</sup>되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경우부터는 형사처벌(범칙금 불가)하도록 하고, 시속 100km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법 제154조제9호<sup>38)</sup>), 시속 100km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53조제2항제2호<sup>39)</sup>), 시속 100km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51조의2제2호<sup>40)</sup>)에 처하도록

---

37) 2018.1.29. 발의, 2020.5.19. 상임위 의결, 2020.5.20.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38)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9)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0)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규정되었으며, 작년 연말(2020.12.10.)부터 시행중<sup>41)</sup>이므로 동 개정 조문의 시행에 따른 효과와 국민여론 등을 지켜본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의 확대 등의 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41) 초과속운전 적발 현황(2020.12.10. ~ 2021.3.29.)

- 단속건수 총 263건 중 80km/h 초과 237건, 100km/h 초과 26건

**<현행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과속운전 처벌 기준>**

| 제한속도 초과          |                                 | 처 벌 기 준                                                                                                                                                                                                                                                                                                                                                                              |                                                |      |           |                                                |                 |                                                |                 |                                |           |                                 |
|------------------|---------------------------------|--------------------------------------------------------------------------------------------------------------------------------------------------------------------------------------------------------------------------------------------------------------------------------------------------------------------------------------------------------------------------------------|------------------------------------------------|------|-----------|------------------------------------------------|-----------------|------------------------------------------------|-----------------|--------------------------------|-----------|---------------------------------|
| 80km/h 이하        |                                 | 20만원 이하 범칙금(법 제156조제1호)                                                                                                                                                                                                                                                                                                                                                              |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실제 부과하는 범칙금액                                                                                                                                                                                                                                                                                                                                                     |                                                |      |           |                                                |                 |                                                |                 |                                |           |                                 |
|                  |                                 | <table><tr><th>제한속도 위반</th><th>범칙금액</th></tr><tr><td>20km/h 이하</td><td>승합: 3만원<br/>승용: 3만원<br/>이륜: 2만원<br/>자전거·손수레등: 1만원</td></tr><tr><td>20km/h ~ 40km/h</td><td>승합: 7만원<br/>승용: 6만원<br/>이륜: 4만원<br/>자전거·손수레등: 3만원</td></tr><tr><td>40km/h ~ 60km/h</td><td>승합: 10만원<br/>승용: 9만원<br/>이륜: 6만원</td></tr><tr><td>60km/h 초과</td><td>승합: 13만원<br/>승용: 12만원<br/>이륜: 8만원</td></tr></table> | 제한속도 위반                                        | 범칙금액 | 20km/h 이하 | 승합: 3만원<br>승용: 3만원<br>이륜: 2만원<br>자전거·손수레등: 1만원 | 20km/h ~ 40km/h | 승합: 7만원<br>승용: 6만원<br>이륜: 4만원<br>자전거·손수레등: 3만원 | 40km/h ~ 60km/h | 승합: 10만원<br>승용: 9만원<br>이륜: 6만원 | 60km/h 초과 | 승합: 13만원<br>승용: 12만원<br>이륜: 8만원 |
|                  |                                 | 제한속도 위반                                                                                                                                                                                                                                                                                                                                                                              | 범칙금액                                           |      |           |                                                |                 |                                                |                 |                                |           |                                 |
|                  |                                 | 20km/h 이하                                                                                                                                                                                                                                                                                                                                                                            | 승합: 3만원<br>승용: 3만원<br>이륜: 2만원<br>자전거·손수레등: 1만원 |      |           |                                                |                 |                                                |                 |                                |           |                                 |
|                  |                                 | 20km/h ~ 40km/h                                                                                                                                                                                                                                                                                                                                                                      | 승합: 7만원<br>승용: 6만원<br>이륜: 4만원<br>자전거·손수레등: 3만원 |      |           |                                                |                 |                                                |                 |                                |           |                                 |
| 40km/h ~ 60km/h  | 승합: 10만원<br>승용: 9만원<br>이륜: 6만원  |                                                                                                                                                                                                                                                                                                                                                                                      |                                                |      |           |                                                |                 |                                                |                 |                                |           |                                 |
| 60km/h 초과        | 승합: 13만원<br>승용: 12만원<br>이륜: 8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km/h ~ 100km/h |                                 | 30만원 이하 벌금(법 제154조제9호)                                                                                                                                                                                                                                                                                                                                                               |                                                |      |           |                                                |                 |                                                |                 |                                |           |                                 |
| 100km/h 초과       | 1~2회                            | 1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53조제2항제2호)                                                                                                                                                                                                                                                                                                                                                           |                                                |      |           |                                                |                 |                                                |                 |                                |           |                                 |
|                  | 3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br>(법 제151조의2제2호)                                                                                                                                                                                                                                                                                                                                            |                                                |      |           |                                                |                 |                                                |                 |                                |           |                                 |

## [강준현의원안]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1. 2. 24.
3. 회 부 일 : 2021. 2. 2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이 법에 도입되고, 당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2021. 5. 13. 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단속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동차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약물·과로·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정안                                                                                                                      |
|-------------------------------------------------------------------------------------------------------------------------------------------------------------------------------------------------------------------------|--------------------------------------------------------------------------------------------------------------------------|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u>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u>자동차등</u> -----<br>-----<br>-----<br>-----<br>-----<br>-----<br>-----<br>-----<br>-----<br>-----. |
|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u>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u>자동차등의</u> -----<br>-----<br>-----<br>-----<br>-----<br>-----<br>-----<br>-----<br>-----<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u>자동차</u>                                                                                                                                                                  | 제148조의2(벌칙) ① -----<br>------( <u>자</u>                                                                                  |

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 7. (생략)

<신설>

<신설>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제150조(벌칙) -----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7. (현행과 같음)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제156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자전거를-----  
-----

12. -----

|                                                                                                                                                                   |                                                                                                                                                                                                                                                                       |
|-------------------------------------------------------------------------------------------------------------------------------------------------------------------|-----------------------------------------------------------------------------------------------------------------------------------------------------------------------------------------------------------------------------------------------------------------------|
| <p>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p> <p>13. (생략)</p> <p><u>&lt;신설&gt;</u></p><br><br><p><u>&lt;신설&gt;</u></p> | <p>-----</p> <p>-----</p> <p>-----</p> <p>---<u>자전거를</u>-----</p> <p>-----</p> <p>13. (현행과 같음)</p> <p>14. 제45조를 위반하여 <u>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u></p> <p>1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p> |
|-------------------------------------------------------------------------------------------------------------------------------------------------------------------|-----------------------------------------------------------------------------------------------------------------------------------------------------------------------------------------------------------------------------------------------------------------------|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sup>42)</sup>에서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및 자전거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음주운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148조의2(일명

4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운창호법”)<sup>43)</sup>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②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156조제11호<sup>44)</sup>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자동차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4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 내용 ]

| 위반행위                 | 현행*                      | 강준현의원안<br>(자동차등과 동일) |
|----------------------|--------------------------|----------------------|
| 혈중알코올농도<br>0.03~0.08 | 범칙금<br>3만<br>↓<br>(10만)  | 1년 ↓<br>5백만 ↓        |
| 혈중알코올농도<br>0.08~0.2  |                          | 1~2년<br>5백~1천만       |
| 혈중알코올농도<br>0.2~      |                          | 2~5년<br>1~2천만        |
| 측정<br>거부             | 범칙금<br>10만<br>↓<br>(13만) | 1~5년<br>500~2천만      |
| 2회이상 위반              | 규정<br>없음                 | 2~5년<br>1~2천만        |

\* (괄호)는 '21. 5. 13.부터 범칙금액 상향 예정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2020년 12월 2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80호,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심사된 바 있는데,

당시 심사과정에서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윤창호법을 무게 30kg, 시속 25km 이내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처벌의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무

계·크기, 속도 및 이용양태가 유사한 자전거·전기자전거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수준의 처벌을 적용<sup>45)</sup>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된 바 있음.

참고로, 2020년 12월 2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하여 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박완수·박성민·천준호의원안 반영), ②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시 처벌(서영교·김예지의의원안 반영), ③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 처벌(서영교의원안 반영), ④ 승차정원 준수 의무 위반 시 처벌(서영교·이주환·박성민의의원안 반영), ⑤ 전조등·미등 미등화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서영교·박완수·송옥주의의원안 반영), ⑥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서영교의원안 반영,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한 바 있음.<sup>46)</sup>

다음으로, 약물·파로·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

---

45) 경찰청은 2021년 5월부터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범칙금 수준을 강화할 예정  
- 자전거등 운전자 음주운전(사고와 무관한 단순음주를 의미함): 3만원 → 10만원  
※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최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자전거등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10만원 → 13만원

46) 이후 2020년 1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대안 의결,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과로·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sup>47)</sup>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에서는 제50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제156조제1호<sup>48)</sup>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의 취지는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에 이미 반영되어 시행만을 앞두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의 실익은 적은 상황이라는 점을 양지할 필요가 있음.

---

47)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8)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다음으로,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법 제46조<sup>49)</sup>를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은 ‘오토바이 폭주족’이 무리를 이루고 과속·곡예운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등’에 비해 구조(총중량 30kg 미만)·성능(최고속도 25km/h 미만) 기준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2020년 12월 2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공동 위험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보여지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sup>350)</sup>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sup>51)</sup>와 제49조제1항

---

49)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50)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

제5호<sup>52)</sup>에 따른 ‘통행방해 행위’<sup>53)</sup>에 대한 처벌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바 있는데,

당시 심사과정에서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차도에서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도록 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처벌의 수준도 과도하다는 것과,

‘통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크기가 매우 작고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이용양태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크기가 더 큰 자전거·전기자전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대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가 결정된 바 있음.

---

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1) 도로교통법 상 처벌수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151조의2제1호), 운전면허 취소·정지(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52)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3) 도로교통법 상 처벌수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법 제156조제1호)

따라서 ‘공동위험 행위’ 등의 처벌 여부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조치, 즉 개정 「도로교통법」  
(법률 제17891호)의 집행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입법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 연도    |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
| 사고(건) | 1,686 | 117  | 225  | 447  | 897  |
| 사망(명) | 26    | 4    | 4    | 8    | 10   |
| 부상(명) | 1,820 | 124  | 238  | 473  | 985  |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통계는 2017년부터 관리

※ 자료: 경찰청

문 의 처

02)6788-5344, 5345

